

명확한 취재 거부 의사에도
무단으로 촬영해 방송,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성립

01

A 방송사는 층간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 윗집의 생활소음에 대해 보복소음을 일으켜 아파트 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취재나 방송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신청인이 층간소음 주제와 관련 없는 개인사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A 방송사는 조정대상 보도는 층간소음 갈등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적인 보도였고,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변조를 통해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취재를 진행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진술했다.

중재부는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지적한 해당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동의를 철회했고 이혼 경력, 진료 내역 등의 사생활을 보도하여야 할 필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다시보기 및 VOD 서비스에서 해당 방송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통상 한계를 넘어선 모욕적인 표현의
오보,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금
지급 등으로 직권조정결정

02

B 신문사는 모 구청 홍보팀장이 통·반장들에게 특정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려고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하였고 신문사 발행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언론사를 탄압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의 직책 및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구청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사과문 게재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하였다.

한편 B 신문사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한 주체로 신청인이 아닌 통장협의회를 지칭한 것이며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명예훼손의 표현행위는 표현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피해자의 주관적 이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고 이해가 올바른 평균적인 독자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전제한 후,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결정은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법원에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 판결을 부정확하게
전달한 기사 제목,
정정보도로 조정성립

03

C 신문사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생협 측과 C 신문사 간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보도하면서, 「○○생협, 유사수신행위 해당」이라는 제목을 게재하여 마치 법원이 ○○생협의 차입금 모집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법원은 소송대상기사의 명예훼손의 요건을 판단하였을 뿐, ○○생협의 자금모집 방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한편 C 신문사는 기사의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긴 하나 본문에는 오해할 내용은 없으며, 이후 인터넷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은 수정했기에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해당 기사의 부정확한 제목으로 인해 법원 판결에 대해 독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인터넷상의 기사를 수정했다 하더라도 지면이나 수정 전의 인터넷 기사만을 접한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C 신문사에 정정보도 게재를 권유하였다.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사의 제목에 대한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공감블로그 속 『언론-사람』 5월호 100자평

서신애 님

[세상읽기] 지면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어떤 일에 얽매이게 되면 깊이 보지 못하고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세상일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오히려 관조하면 더 잘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면서 관조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강나 님

[언론중재법 NOW] 글과 같이, 불명확한 기사와 그 댓글로 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례는 이제는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되었지요. 언론중재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정확하지 않은 기사들로 피해를 입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임청하 님

[언중노트] '촬영을 거절할 권리, 공표를 거절할 권리'라는 글이 흥미로웠습니다. 방송사 제작진들에게 주제와 적합한 '그림'이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들에게 좀 더 신뢰받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제작과정에서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http://pacblog.kr>) 『언론-사람』 6월호 발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감이나 의견을 6월 20일(월)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는 100자평을 남겨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트콘(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